

---

# 2023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 공개용 -

---

2023년 9월

# 2023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9. 14.(목) 14:00~16:00
- ◆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 ◆ 참 석 : 10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강성국
  - 내부위원(2): 윤정훈(기록정책과장), 유숙현(보존서비스과장)
  - 배 석 자(4): 고경희(서울기록원장), 김은아(간사), 김지혜(열람담당), 서광자
- ◆ 안건 및 회의결과

일련번호	심의(보고)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3-1 (보고)	'23년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추진 현황	○ 보고 사안으로 이견 없음	가결
2023-2	'23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 이견 없음	가결
2023-3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 제14조제2항 수정 -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 '제1항 각 호에 의한'으로 수정 ○ 제14조제1항제3호 수정 - '비디오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 → '아날로그 영상·음성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으로 수정 ○ 제14조제1항제5호 수정 - '동영상데이터 50GB 이상' → '동영상·음성데이터 50GB 이상'으로 수정 ○ 정책 총괄 부서인 서울기록원 기록 정책과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검토 후 운영 규정 확정	수정 가결

## □ 주요 발언 내용

### ▶ 개회 및 신규위원(1인) 위촉

#### <보존서비스과장>

- 2023년 첫 번째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먼저 위원님들 소개가 있습니다.
- 내부위원으로 윤정훈 기록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외부위원으로 이상미 위원장님, 김성순 위원님, 김희란 위원님, 신규 위촉되신 강성국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강성국 위원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원장님 인사 말씀 후에 강성국 위원장님 신규 위촉장 수여가 있습니다.

#### <서울기록원장>

- 기록물공개심의회는 법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1차 안건 뿐만 아니라 2차, 3차에는 더 많은 안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리를 마련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실무자들이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실무 현업부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은 다른 업무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존서비스과장>

- 다음 위촉장 수여가 있습니다.

## <보존서비스과장>

-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해주시겠습니다.

## ▶ <안건 1: '23년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위원장>

-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기록원 2023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부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안건은 총 3개이며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간사가 안건 및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고, 회의 종료 시 의결서 확인 및 서명을 통해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 그러면 간사가 첫 번째 안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안건1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 일동>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안건 2: '23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심의

- 두 번째 안건은 '23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에 대한 안건인데요. 간사는 두 번째 안건과 사전검토의견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안건2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사전검토 의견은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안건2에 관하여 세 분의 위원님은 기록원의 검토 결과와 동일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서는 도시정비과와 문화정책과 기록의 공개검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건자료로 5~6페이지입니다.
- 도시정비과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사항은 ‘50년이 경과 한 기록물과 30년이 경과 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성명과 주소의 공개 기준에 대해 ‘50년’으로 결정한 당시 의결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22년 제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 회의록을 보니, 당시 기록물공개심의회 간사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토지관련 기록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50년’이라는 기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0년이 경과된 기록의 개인정보는 30년, 40년이 지나도 대부분 부분공개 6호로 기계적으로 분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년이라는 안을 제시를 하였고, 당시 심의회 때 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50년’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30년이 경과되면 성명과 주소는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되어서 생산부서 의견조회 때 추가적으로 조회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내용을 들으니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30년으로 하자고 의결했던 것 같습니다.

## <○○○ 위원>

- 당시 50년으로 하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의결했던 것 같습니다.

### <간사>

- 문화재정책과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도시정비과 기록의 경우 성명,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30년이 경과 하면 공개로 하였는데, 문화재정책과의 기록은 30년이 경과 하여도 개인정보를 부분공개하고 있는데, 같은 정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문화재정책과 기록은 2022년 제1차 심의회 때 논의되었던 기록으로 당시 30년이 경과 하면 성명, 주소를 공개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결하실 때는 문화재 같은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그리고 소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공개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부분공개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개재분류 사업에서도 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에 대해 부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 <○○○ 위원>

- 이전 심의회에서 이런 결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심의회에서 간사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 <○○○ 위원>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개인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공개도 되지만 살아있을 때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단서 조항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자제분이 그분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도시정비과 기록은 체비지 매각과 관련된 건이고, 30년이 경과했다고 해도 그분이 살아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50년이 경과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봤을 때는 당사자가 살아계신다면 보호대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름에 어느 동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는 군까지만 표기해도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정보를 함께 묶어줘야 되거든요.

## <○○○ 위원>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살아계신지, 안계신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요?

## <주무관>

- 그래서 대부분 한 150년 넘어가면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개인정보 취급을 하거든요.

## <○○○ 위원>

- 그렇습니까?

### <○○○ 위원>

- 저도 처음에 안건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다 이제 사망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체비지 관련 업무나 행정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인데,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나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로 여겼을 때 개인정보의 보호에 어떤 민감한 보호 필요성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 <주무관>

-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것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후순위로 밀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한다라는 무기가 있다면 굳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한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 <주무관>

- 그런데 반드시 법에 근거를 해야해서요. 조례도 아니고 법령에 근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체비지 매각 관리라는게 공공부지를 개인한테 매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땅을 공공이 매입을 할 때 작성이 되는건가요?

## <주무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 국가가 개인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기존에 공개된 자료상으로 말씀하신 그 등기부 같은 기록은 해당 지역을 조회했을 때 실명과 앞자리 주소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나 과거 부등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번호는 아예 없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한자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 주소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것 같고, 일반동산문화재등록대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소유권은 같은 소유권 인거죠. 등기든 토지 등기든 일반인이 조회해서 볼 수 있는 정보라면 굳이 우리가 비공개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논의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실무하는 입장에서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 <주무관>

- 아닙니다. 법에 근거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 상위인 것은 아닙니다.

## <○○○ 위원>

- 체비지가 공개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근거 자체가 사실은 없을테고, 그럼 결국에는 「정보공개법」을 우선할 것인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할것인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충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양수인 양도인 성명 주소까지만 공개하기로 한 것은 등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지역 등기부 예전 기록까지 보면 개인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적이나 인감은 민감 정보니까 그런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자라는 취지로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동산문화재 등록대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 <간사>

- '22년 심의회 때는 문화재등록대장으로 심의하셨습니다.

### <○○○ 위원>

- 조희가 안되는 정보 아닌가요? 저는 원래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문을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 등기부를 공개할지 말지 우리가 논의하지 않잖아요. 그런것과 비슷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동산문화재 등록 대장을 건축물대장처럼 일반인도 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 <간사>

- 일반동산문화재 등록 대상도 문화재보호법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2년 의결 당시 공개심의회 때 검토한 사항에 따르면 기관마다 고시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성명중에 성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주소도 시군구까지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심의할 때 여러 의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말씀을 들으셨는데 두 번째 안건의 6개 부서 공개재분류 검토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기록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 회의록에는 도시정비과의 '50년' 기준에 대해서는 옳기였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 30년 경과 기록물의 개인정보 공개여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전 심의 결과까지 돌릴지에 대해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일단 궁금한 것은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호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적인 법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록원이고 기록의 공개와 관련한 법령이 제일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법률이 좀 더 일반적인지 말씀해주시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어떻게 공개를 할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 해당 법들이 특별하게 우열 관계를 규정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 가지 법률 모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어요. 「정보공개법」에도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에 따른다. 우열 관계를 따지려면 정말 누군가 문제 제기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해라고 따질

수 밖에 없고,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 그래서 개인정보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다 공개하고 개인정보로 걸릴 것 같은 것들은 비공개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었고, 주소도 읍면동까지만 공개해서 최대한 식별 정보를 주지 말자는 취지로 의결했습니다.

### <○○○ 위원>

-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실제로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의거해서 수집한 정보라든지 국가안보 공공위생과 관련된 시급하게 알아야 되는 수집 정보들 그리고 취재라든지 선거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 예외로 두되, 그것을 남용하면 안되니 최소한으로 적용하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같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은 굳이 이것까지도 개인정보 보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 같고 다만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것들이 공공의 열람 목적으로 이미 공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공의 열람 서비스가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고 결정되고,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그에 준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체비지는 일반에 공개된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 <○○○ 위원>

- 잉여와 관련된 부분이고 재산권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공개법」과 관련되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어디를 더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 <○○○ 위원>

-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심의회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대한 안전하게 가면 이름까지 다 가리는건데, 그러면 또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질테고, 그러면 공개심의 대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무엇이 행정 효율상 나은가 어떻게 보면 다 가리는 것이 제일 편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정보가 왜 비공개냐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주소의 경우 읍면동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 위원>

- 마스킹은 어떻게 하나요?

#### <김지혜 주무관>

- 공개 결정이 되면 마스킹 하지 않고, 비공개 정보는 전부 마스킹을 한다. 그런데 사실 체비지 기록은 실제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보면 다 나오는데 굳이 가리고 주는 이유가 뭐냐는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와서 공개로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 <○○○ 위원>

- 제 경험적으로는 이런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산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면 사실 공개 판결이 나오는데 행정기관은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 <○○○ 위원>

- 생산부서와 서울기록원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예전에 의결한 것을 보고 결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느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심의를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이전 의결사항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전 의결사항에 따라 공개하였을 때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 <김지혜 주무관>

- 네. 공개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공개를 안했을 때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민원은 들어왔습니다.

### <간사>

- 생산부서 의견조회 시 담당자에게 확인 했는데요. 오히려 비공개일 때보다 이렇게 부분 공개나 공개로 되어 있을 때 본인들도 활용하기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 위원>

- 아예 다 비공개를 할까 하면서도 결국엔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음면동이하’ 공개라는 기준으로 마스킹을 하려면 전체 페이지를 다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러면 열람업무에서 힘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록원에서 외부 용역으로도 감당가능한 행정력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 <○○○ 위원>

- 등기부 다른 행정 문서에 공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 하면서 비공개가 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다른 문서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걸 굳이 비공개하면서 우리가 그 민원을 처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 기존 안 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 위원>

- 열심히 저희가 논의했다는 것을 회의록에 잘 남겨서 혹시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려한 것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안건 '23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여러 관계 법령과 현재 기록원에서 운영되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의결되었던 것처럼 다른 데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면 성명이나 읍면동 정도까지의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크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심의 그 논의 자체가 어떤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선이 아니라고 하면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결정한 안에 대해서는 나름 합리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되

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혹시 이 결정이 이전에 있었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혹시 불편함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신청이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전에 했던 논의에 대해 동의합니다.

#### <○○○ 위원>

- 네, 저도 동의합니다.

#### <○○○ 위원>

- 개인정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만 가리는 수준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두 번째 안건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안건3: '23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심의

#### <위원장>

- 세 번째 안건인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안건 및 사전 검토 의견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안건3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위원님께서 주신 검토 의견은 ‘기록물공개심의 관련 조항 삭제와 관련한 적정한 이유의 개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록열람 신청 서식, 방법의 현행화에 대하여 논의를 나눠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 ○ ○ 위원님께서서는 전부개정안 조항별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6조제2항의 열람 신청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19조제2항의 제한적열람 신청에서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전산시스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제출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는 열람신청 방법이 방문, 정보통신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울기록원에서는 열람신청을 할 때,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6조의 열람신청 제출 방법에 방문과 정보통신망만 적은 이유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기록원에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없고, 서울시 행정절차 상 민원담당관에 청구서를 보내고 민원담당관에서 등록한 후 서울기록원으로 부서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규정이 서울기록원의 열람 운영 규정이다보니, 서울기록원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 <○ ○ ○ 위원>

- 제19조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19조도 전화, 우편은 삭제하고 방문과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현행 운영에 맞는건가요?

### <주무관>

- 제3장제19조에서의 제한적 열람은 기록원에 방문하셔서 원본이나 전자 파일을 열람하는 내용이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하는 내용

은 아니라서 열람담당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원>

- 제한적 열람은 열람 신청을 일단 한 다음 기록원에서 제한적 열람절차를 통지하고 그다음 다시 재차 안내가 되어 방문하는 절차인가요?

<주무관>

- 일반 열람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파일이나 사본 제공을 받으시는 경우에 신청을 하고 제한적 열람은 기록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원본을 열람하시겠다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간사>

- 다음은 사본 제공이나 기관 간의 협조 시 비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관 간 협조 시에는 서로 공문을 통해서 신청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열람제공을 하고 있고, 시민분들에게 사본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

- 정보공개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 얘기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법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

- 제17조에 있습니다.

<○○○ 위원>

- 열람으로만 되어 있고 사본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간사>

- 네 저희도 검토할 때 여기에 사본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열람 수수료라는 항목에 사본 제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간사>

- 그리고 안건자료 제14페이지 제8조제2항 끝부분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송부할 수 있다.’로 바꾸면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

- 이 부분은 업무 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점에 있어 서울기록원의 업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 <간사>

- 제8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 기록원이 관계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저희 서울기록원에 사본 제공과 관련해서 업무 협조를 요청 할 때 이제 공문으로 해주시는데요. 그 공문에 요청 목적과 대상기록물 그리고 그 기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첨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첨부를 해주시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기관협조로 받아서 다른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공문상에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5페이지에 제8조제4항 제9조제6항, 제15조에 ‘기록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인데요. 이이 대해 기록원이 열람을 하시는 분들께 그런 의무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지의무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네 이부분은 기록원의 의무가 아닌 기록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주는 것인데, 본 규정이 기록원 내부 규정인데 외부 이용자들에게 따르라 마라 하는 형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 근데 16조에 보니까 16조가 오히려 제가 생각한 형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16조처럼 다른 것들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냈습니다.

### <○○○ 위원>

- 실제 운영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내를 하시나요?

### <주무관>

- 네. 실제로는 서약서랑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 <○○○ 위원>

- 대상자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없거든요. 강제는 기록원 내부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무관>

- 저희가 형식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서 제한적 열람 시 원본기록물의 편철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 <○○○ 위원>

- 「공공기록물법」에 있는 내용을 원용한 것인가요?

### <주무관>

- 네. 그럼 그런 내용을 추가한 후에 열람인들에게 고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 <○○○ 위원>

-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법에 특별하게 이용자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데 내부에서 의무 규정을 정해봐야, 혹시나 그런 문제가 실제로 생겨서 소송이 발생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법률 내용을 근거로 하신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위원>

-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4조 같은 경우에 대량 복제 및 사전 동의 제공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기록원의 기록열람센터에서 하는 기록유형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국가기록원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봤었던 게 뭐였냐면 실제로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화 부분이 여기에 명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상 중심으로 있는데 음성인 경우도 있거든

요. 예를 들면 3번의 비디오테이프 이거는 보통 이제 영상을 보고 이  
러기 때문에 약간 용어를 아날로그 영상 및 음성 테이프 이런 식으로  
되게 광의적으로 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VHS 이 정도로만 착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카세트테이프이라든지 영화필름 이런 것들은 다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동영상 데이터도 동영상·음성데이터라든  
지 이런 식으로 폭 넓게 다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제14조제2항에서도 제1항 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데이터라  
그랬는데 우리가 필름이나 100매 이상 줄 때 보통 데이터로 주지 않  
아요. 어떻게 주세요? 복사해서 주시나요?

#### <주무관>

- 네.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제2호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2번부터 5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조 통계 보고에 국가기록원은 분기별로 통  
계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철저하게 월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업무 부담은 없나요?

#### <주무관>

- 네. 없습니다.

#### <○○○ 위원>

- 이미지도 300MB인데 서울기록원은 500MB로 더 많이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업무 부담이 없나요?

<주무관>

- 네. 업무에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 비디오테이프도 국가기록원은 1개예요.

<주무관>

- 근데 줄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기록정책과 업무분장상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제처처럼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예를 들면 단순히 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서울기록원장으로 바꾼다거나 따옴표 표기법, 그리고 저 제 몇 조 몇 항 이랬을 때 띄어쓰기 안 하거든요. 내용을 바꾸지는 않고요. 띄어쓰기라든지 형식적 문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기록정책과에서 문구 수정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검토받은 걸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확정을 받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14조에서 필름이나 음성 매체들 내용을 추가하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 위원>

○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제14조제2항에 제3호 내지 제5호가 아니라 ‘각 호에 의한’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제1항 각호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다 동의해 주시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일동>

○ 네.

<위원장>

○ 제14조2항에서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이 아니라 ‘제1항 각호에 의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나 논의사항은 없으십니까?

<○○○ 위원>

○ 기록물 열람신청서는 이제 없는건가요? 정보공개청구서로 활용하시기 때문이죠?

<주무관>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안건이 거의 다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이어서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안건 중에서 두 번째 안건 기록물 공개 재분류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안건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14조 14조 2항에 있어서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데이터를 제1항 각호로 바꾸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결에 대해서 가결하시겠습니까?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의결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님 의결 사항을 보여주시고 심의의결서 작성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오늘 총 3개 안건 중에 첫 번째 보고안건은 보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견 없으므로 의결 내용을 가결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차 기록물 공개 재분류 검토 결과도 ‘이견 없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제 14조제2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제2항의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을 ‘제1항 각 호에 의한’으로 수정, 제14조제1항제3호의 ‘비디오 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을 ‘아날로그 영상·음성 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1항제5호를 ‘동영상데이터 50GB 이상’을 ‘동영상·음성 데이터 50GB’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총괄부서인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의 검토 후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정 가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 정책과 및 심의위원들의 검토 후 확정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간사>

- 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서 내용에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의결서 내용에 동의하시면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023년 11월 2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 수고하셨습니다.